현장별 보증제 도입 등 보증제도 개선방안

이보라·김정주

2018. 10.

대 한 건 설 정 책 연 구 원

요 약

- □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은 건설기계 대여계약 체결 시 원·하도급 건설업자가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고, 보증사고(체불) 발생시 보증기관(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설비건설공제조합, 서울보증)이 대신 보증금을 지급하는 제도(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임
- □ 정부는 건설기계 대여업 종사자 보호 및 보증 간소화를 위하여 현행 건설기계별 개별보증에서 공사현장별로 사용되는 건설기계 전체를 일괄 보증하는 방식으로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를 개편하고자 함(건설기계별 개별보증의 예외 규정도 인정하고 있음)
- □ 관련 전문가 자문 및 자료를 토대로 현행 보증실태를 파악후 업체의 보증사고 방지 측면 과 현장관리 측면을 모두 고려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의 적정한 현장별 보증 적용 범위를 설정하였음
- □ 현장별 보증범위는 공사금액 및 공사기간에 따라 1안의 경우 공사금액 5천만원 이상과 공사기간 1년 이상, 2안의 경우 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과 공사기간 3개월 이상인 경우로 현장별 보증범위를 제안하였음

〈표〉대안에 따른 현장별 보증규모

| 구 분 | 고니그아 | 공사기간 | 전체 전문공사 중 해당비율 | | |
|------|----------|--------|----------------|----------|--|
| T 正 | 공사금액 | | 해당 건수(%) | 해당 금액(%) | |
| 대안 1 | 5천만 원 이상 | 1년 이상 | 24% | 95% | |
| 대안 2 | 2천만 원 이상 | 3개월 이상 | 40% | 99% | |

- □ 현장별 보증은 기존의 건설기계 당 지급보증의 개념이 아닌 현장 단위의 보증으로 현장의 특성을 반영한 보증범위이므로 개별 보증 시 고려되었던 건설기계대여건수는 현장별 보증 범위의 기준에 포함하지 않았음
- □ 현장별 보증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업체의 독려 및 하도급내역서에 보증 수수료 확보가 반 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임

목 차

| I. A | 서 론 | ٠1 |
|------|------------------------------|-----|
| 1. |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 1 |
| 2. | . 연구내용 및 방법 | • 2 |
| Ⅱ. ३ |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 | .3 |
| 1. | . 건설기계업 및 건설기계 등록현황 | . 3 |
| 2. | .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 고찰 | ٠6 |
| | | |
| Ⅲ. 3 | 건설기계 대여대금지급보증 실태 | 12 |
| 1. | . 건설기계 대여현황 | 12 |
| 2. | .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현황 | 16 |
| 3 | .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체납현황 | 21 |
| Ⅳ. 3 |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 개선방안 | 23 |
| 1. | .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쟁점사항 | 23 |
| 2. | . 현장별 보증과 개별보증의 합리적 적용 범위 제안 | 23 |
| 3 | . 보증 수수료 확보방안 필요 | 38 |
| V. 3 | 결론 및 향후과제 | 39 |
| 참고. | 무허 | 41 |

I 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 □ 건설산업 구조상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단계상 도급구조의 가장 말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건설근로자와 같이 1인 사업자 형태로 운영되는 등 열악한 작업환경에 처해있음
- □ 정부는 2011년 건설기계 대여계약 체결시 원·하도급자와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을 보증하고, 보증사고 발생시 보증기관이 대신해서 보증 금을 지급하도록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를 도입하였음
- □ 이후 건설기계대여엽자를 보호하기 위해 건설기계대여 계약 체결 시 보증가입을 의무화하였으나, 건설현장에서는 구두계약 혹은 보증서 미발급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에 문제가 되고 있음
 - 보증서 발급을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정부자료에 의하면 전문건설업체 의 건설기계대여대금 보증가입률은 10%내외로 가입률이 현저하게 저조한 실정임
- □ 정부는 건설기계 대여업 종사자 보호를 위해 건설기계 대여대금 보증방식을 기존 의 개별보증에서 현장별 보증으로 개편하고자 함 (2018.1.27. 의원발의)
- □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건설기계 대여계약 체결건별로 보증서를 발급하여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교부할 수 있도록 함
-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제도의 적정한 현장별 보증 및 개 별보증 적용범위를 설정하였음

2. 연구내용 및 방법

1) 문헌연구 및 제도 조사

□ 문헌연구 및 제도 조사를 통해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제도와 건설기계임대현황 및 전문건설업 현황에 대하여 전반적 검토하였음

2) 자문 및 전문가 조사

- □ 건설기계 관련 분야 연구자와 현장경험을 갖고 있는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자문회의 및 전문가 면담을 거쳐 업체의 실상 및 현실을 파악하였음
 - 대한전문건설협회
 - 대한전문건설공제조합
 - 대한건설기계협회
 - KISCON
 - 전문건설업체 및 건설기계업체 관련 전문가

3) 데이터 분석

- □ 건설기계 대여대금지급보증의 보다 객관적인 실태를 파악하기위해 관련기관의 데 이터를 확보하여 연구에 참고하였음
 - 국토교통부 통계누리의 종합건설업 및 전문건설업 시장현황
 - 대한건설기계협회의 체불현황 및 건설기계대여 계약사실신고 데이터 분석
 - 전문건설공제조합의 보증데이터 분석
 - KISCON의 건설공사대장항목(건설기계대여) 데이터 분석

4) 연구 내용

- □ 전문건설업체와 기계임대업자간 보증실태 파악
 -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지급보증서 발급 및 보상실적 검토 등
- □ 현장별 보증 예외기준 마련
 - 현장별 보증제 적용 기준 및 전문건설업체 자격 등(계약금액 및 계약 건 수)

Ⅱ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

1. 건설기계업 및 건설기계 등록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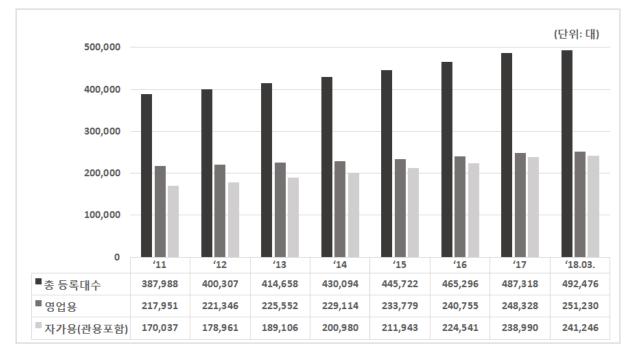
1.1. 건설기계의 개념과 분류

- □ 건설기계란 굴삭·운반·천공·정지·포장 등 주로 토목건설 공사에서 사용되는 기계· 장비를 통칭함
 - 건설기계는 사용용도, 기능, 동작형태, 이동방법 등 다양한 기준에 의해 분류할 수 있으며, 건설기계의 용도에 따라서는 토목기초장비, 생산장비, 포장장비, 운송·하역 장비, 지원장비, 특수건설기계로 분류가 가능함
- □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의 법적 정의는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27개 기종을 말함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27개 기종의 건설기계
 - 2008년 타워크레인이 건설기계에 편성됨

1. 불도저, 2. 굴삭기, 3. 로더, 4. 지게차, 5. 스크레이퍼, 6. 덤프트럭, 7. 기중기, 8. 모터그레이더, 9. 롤러, 10. 노상안정기, 11. 콘크리트뱃칭플랜트, 12. 콘크리트피니셔, 13. 콘크리트살포기, 14. 콘크리트믹서트럭, 15. 콘크리트펌프, 16. 아스팔트믹싱플랜트, 17. 아스팔트피니셔, 18. 아스팔트살포기, 19. 골재살포기, 20. 쇄석기, 21. 공기압축기, 22. 천공기, 23. 항타 및 항발기, 24. 자갈채취기, 25. 준설선, 26. 특수건설기계, 27. 타워크레인

1.2. 건설기계업 현황

- □ 건설기계 등록 수는 〈그림Ⅱ-1〉과 같이 2011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 임
 - 건설기계 총 등록대수는 연평균 4%(16,555대)씩 증가하였고, 영업용은 연평균 6% (5,063대)씩 증가, 자가용(관용포함)은 연평균 6%(11,492대)씩 증가하였음
 - 2018년 3월 말 기준 건설기계 등록대수는 492,476대이며, 그 중 건설기계 용도별 등록을 보면 영업용이 51%(251,230대), 자가용이 48.3%(237,871대), 관용이 0.7% (3,375대)로 나타남



〈그림 11-1〉 연도별 건설기계 등록대수 및 용도별 등록현황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기계 현황 통계

- □ 건설기계 기종별 용도별 등록현황 및 구성비는 〈표Ⅱ-1〉과 같음
 - 2018년 3월 말 기준 27종의 건설기계 492,476대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기종은 지게차 183,797대(37%)와 굴삭기 147,671대(30%), 덤프트럭 60,806대 (12%)로 전체의 80%를 차지하고 있음
 - 이밖에도 1,000대 이상의 기종은 콘크리트믹서트럭, 로더, 기중기, 콘크리트펌프, 롤러, 타워크레인, 천공기, 공기압축기, 불도저로 건설기계 간 편중치가 심한 것으로 파악됨
 - 영업용 건설기계의 경우 굴삭기가 98,498대로 등록대수가 가장 많았으며, 5,000대 이상의 영업용 건설기계 중 전체 등록대수 대비 영업용의 비중이 높은 기종은 덤프 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기중기, 콘크리트펌프, 롤러, 타워크레인으로 나타남

〈표 Ⅱ-1〉 건설기계 기종별 용도별 등록현황

(단위: 대, %)

| 7 H | ÷Lall | 자기 | 용 | 영입 | 설용 | 관 | 용 |
|-----------|---------|---------|-------|---------|-----------|-------|-----|
| 구 분 | 합계 | 등록대수 | 구성비 | 등록대수 | 구성비 | 등록대수 | 구성비 |
| 지게차 | 183,797 | 149,326 | 81.2 | 33,465 | 18.2 | 1,006 | 0.5 |
| 굴삭기 | 147,671 | 47,933 | 32.5 | 98,498 | 66.7 | 1,240 | 0.8 |
| 덤프트럭 | 60,806 | 12,448 | 20.5 | 47,971 | 78.9 | 387 | 0.6 |
| 콘크리트믹서트럭 | 26,743 | 4,524 | 16.9 | 22,219 | 83.1 | 0 | 0.0 |
| 로더 | 24,572 | 17,004 | 69.2 | 7,018 | 28.6 | 550 | 2.2 |
| 기중기 | 10,767 | 896 | 8.3 | 9,848 | 91.5 | 23 | 0.2 |
| 콘크리트펌프 | 7,018 | 355 | 5.1 | 6,663 | 94.9 | 0 | 0.0 |
| 롤러 | 6,531 | 856 | 13.1 | 5,617 | 86.0 | 58 | 0.9 |
| 타워크레인 | 6,172 | 94 | 1.5 | 6,078 | 98.5 | 0 | 0.0 |
| 천공기 | 5,882 | 2,299 | 39.1 | 3,583 | 60.9 | 0 | 0.0 |
| 공기압축기 | 4,537 | 921 | 20.3 | 3,616 | 79.7 | 0 | 0.0 |
| 불도저 | 3,710 | 422 | 11.4 | 3,241 | 87.4 | 47 | 1.3 |
| 아스팔트피니셔 | 987 | 182 | 18.4 | 803 | 81.4 | 2 | 0.2 |
| 항타 및 항발기 | 953 | 91 | 9.5 | 862 | 90.5 | 0 | 0.0 |
| 모터그레이더 | 705 | 21 | 3.0 | 665 | 94.3 | 19 | 2.7 |
| 특수건설기계 | 666 | 76 | 11.4 | 549 | 82.4 | 41 | 6.2 |
| 쇄석기 | 409 | 221 | 54.0 | 188 | 46.0 | 0 | 0.0 |
| 준설선 | 192 | 75 | 39.1 | 116 | 60.4 | 1 | 0.5 |
| 콘크리트피니셔 | 145 | 31 | 21.4 | 114 | 78.6 | 0 | 0.0 |
| 아스팔트살포기 | 85 | 38 | 44.7 | 46 | 54.1 | 1 | 1.2 |
| 콘크리트뱃칭플랜트 | 75 | 37 | 49.3 | 38 | 50.7 | 0 | 0.0 |
| 자갈채취기 | 22 | 15 | 68.2 | 7 | 31.8 | 0 | 0.0 |
| 스크레이퍼 | 21 | 2 | 9.5 | 19 | 90.5 | 0 | 0.0 |
| 콘크리트살포기 | 4 | 2 | 50.0 | 2 | 50.0 | 0 | 0.0 |
| 아스팔트믹싱플랜트 | 4 | 1 | 25.0 | 3 | 75.0 | 0 | 0.0 |
| 노상안정기 | 1 | 1 | 100.0 | 0 | 0.0 | 0 | 0.0 |
| 골재살포기 | 1 | 0 | 0.0 | 1 | 100.0 | 0 | 0.0 |
| 총 계 | 492,476 | 237,871 | 48.3 | 251,230 | 51.0 | 3,375 | 0.7 |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기계 현황 통계(18.03.31기준)

2.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 고찰

2.1.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 개요

- □ 건설기계 대여계약 체결 시 원·하도급 건설업자는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고, 보증사고(체불) 발생시 보증기관(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설비건설공제조합, 서울보증)이 대신 보증금을 지급하는 제도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 □ 정부(국토교통부)는 2011년 10월 민관합동 '건설산업 공생발전위원회¹⁾'를 발족함으로써 건설산업 참여자간 양극화 해소, 공정한 공사비 분배, 수평적 협력관계를 형성하고자 함
 - 이해관계 대립으로 개선되지 못했던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 하도급대금지 급보증제도 등의 도입을 결정²⁾
 - 국회 주승용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건설산업기본법 개정(2012.12.18),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됨
- □ 현행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는 공사현장에서 사용되는 건설기계별로 전문 건설업체와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 개별 보증이 이루어지고 있음

2.1.1. 보증대상 및 보증면제

-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제1항에 따라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 대여 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함
- □ 제3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도급계약(하도급계약을 포함)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을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분명하게 적어야 함

¹⁾ 정부, 발주자, 원·하도급자, 엔지니어링 업체, 건설근로자 단체 등이 위원회에 참여

²⁾ 제5차 건설산업 공생발전위원회(2012. 4.25)

^{6 ·} 건설정책리뷰 2018-05

- □ 건설업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지 아니한 경우
 - 시정명령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건설업자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제 4호, 제82조제1항제8호)
 - * 하위 법령(동법 시행령 별표6)에서 영업정지 1개월 또는 과징금 2천만원을 부과하는 세부기준 마련

□ 단, 다음과 같은 경우 보증을 면제함

-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직접 지급한다는 뜻과 그 지급의 방법·절차에 관하여 발주자·건설업자 및 건설기계 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
- 1건의 건설기계 대여계약 금액(같은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2건 이상의 계약으로 분할 하여 계약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2.1.2. 보증금액 및 보증수수료

- □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의 보증금액은 아래와 같으며, 이에 대응하여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건설기계 대여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 하는 금액의 건설기계 대여계약 이행보증서 교부를 요구할 수 있음
 - 계약기간이 4월 이하인 경우 : 건설기계 대여금액에서 계약상 선급금을 제외한 금액
 - 계약기간이 4월을 초과하는 경우 :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 □ 발주자는 건설공사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보증수수료의 금액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지출한 보증수수료보다 많은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으며, 적은 경우에는 원도급내역서의 보증수수료 범위 내에서 추가로 지급할 수 있음
 - 건설공사의 도급계약(하도급계약을 포함한다) 당사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서 발급에 드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에 분명하게 적어야 함(건산법 제68 조의3제3항)

- 발주자는 해당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제출한 소요비용 지출내역을 확인하여 건설 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지출한 금액 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음(건산법 시행령 제64조의3제 3항)
- 하도급자가 실제 부담한 건설기계보증 수수료가 하도급내역서에 반영된 수수료 보다 많은 경우, 추후 원도급자는 원도급내역서의 보증수수료 범위내에서 추가 지급할 수 있음. 다만, 실제 보증수수료는 기준요율을 기준으로 산정함(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6-363호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 국토교통부고시 개정 령안(2016.06.22))

2.1.3.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 □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363호)
 - 발주자와 종합건설업자가 계약하는 원도급 산출내역서 반영 기준 (종합건설업자가 종합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포함)
 - 보증서발급금액 :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 요율
 - 적용요율(표 Ⅱ-2와 같음)

〈표 11-2〉종합건설공사업종 그룹별 적용요율

| 구 분 | 요 율 |
|----------------------|-------|
| 토목공사(토목·건축공사 포함) | 0.41% |
| 건축공사 | 0.07% |
| 산업·환경설비공사 및 조경공사 | 0.13% |

- 발주자와 전문건설업자가 계약하는 원도급 및 하도급 산출내역서 반영 기준
 - 보증서발급금액 :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 요율
 - 적용요율(표 3과 같음)

〈표 Ⅱ-3〉 전문건설공사업종 그룹별 적용요율

| 7 8 | | 요 율 | |
|-----|--|-------|-------|
| | 구분 | | |
| A그룹 | 준설공사, 토공사 | 0.56% | 0.43% |
| B그룹 | 시설물유지관리, 도장공사, 포장공사, 상·하수도설비공사 | 0.49% | 0.4% |
| C그룹 | 비계·구조물해체공사, 보링·그라우팅공사, 수중공사, 가스시설시공 1종 | 0.39% | 0.31% |
| D그룹 | 석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 0.28% | 0.23% |
| E그룹 | A그룹~D그룹 이외의 공사 (실내공사, 미장공사, 금속공사, 지붕공사, 기계설비공사, 철도공사, 조경식재공사, 조 경시설물공사, 강구조공사, 철강재공사, 삭도설치공사, 승강기공사, 가스시설시공2·3 종, 난방시공1·2·3종) | 0.11% | 0.09% |

2.2.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제도 개정안

- □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다단계 도급구조의 말단에 위치하며, 사실상 건설근로자와 유사한 1인 사업자(건설기계 1대 소유, 본인 운전)는 전체의 약 30%인 약 13만명 에 이르고 있음3)
- □ 건설기계대여 계약 체결 시 보증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으나, 현장에서는 단기임대 등의 이유로 구두계약을 체결하여 보증서 발급을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4)
- □ 따라서 개정안은 건설기계 대여업 종사자 보호 및 보증간소화를 위하여 현행 건설 기계별 개별보증에서 공사현장별로 사용되는 건설기계 전체를 일괄 보증하는 방식 으로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를 개편하고자 함

³⁾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제365회 국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9p

⁴⁾ 국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전문건설업체의 건설기계대여대금 보증가입률을 10%내외로 추산하고 있음

| · · · · · · · · · · · · · · · · · · · | 개 정 안 |
|---|---|
|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①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함. |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① <u>자신이 시공하는</u> 1개의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건설기계 대여대 금을 보증(이하 "현장별 보증"이라 한다)하는 보증서 |
| | 를 그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는 건설기계 대여 계약을 체결할 때 그 보증서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 체결건별로 보증서를 발급하여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교부할 수 있음 ② (현행 제1항 단서와 같음) |
| -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불하기로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 등 국토교통부 경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음 | <u> 10 11 0 0 1 0 1 0 0 1 0 1 0 0 1 0 0 1 0 0 1 0 0 1 0 0 1 0 0 1 0 0 1 0 0 1 0 0 1 0 0 1 0 0 1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0 1 0 0 0 0 1 0</u> |

- □ 개정안은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보증(이하 "현장별 보증"이라 한다)하는 보증서를 그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할 때 그 보증서 사본을 교부하도록 의무화함
- □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건설기계 대여계약 체결 건별로 보증서를 발급하여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교부할 수 있도록 함
 - 그러나 개별보증의 위임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거나 법률에서 대 강을 정하고 세부적인 사항을 하위 법규에 위임하는 등의 명확한 범위 규정이 필요
- □ 본 개정안과 같이 현장별 보증을 도입할 경우 현행 개별보증에 비해 높아질 보증 수수료를 발주자가 반영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등의 대책 논의 필요

〈표 Ⅱ-4〉개별보증과 현장별 보증 비교

| 구 분 | 개별 보증 | 현장별 보증 | | |
|--------------------|----------------------|--------------------------|--|--|
| - 개념 | 공사현장에 사용되는 | 공사현장별로 사용되는 | | |
| 게임 | 건설기계별로 개별 보증 | 건설기계 전체를 현장하여 보증 | | |
| 보증대상 | 원·하수급인이 건설기계대여업 | 자와 체결한 건설기계 임대계약 | | |
| 보증 발급 의무 | 건설업자(원 | 실·하수급인) | | |
| ᆸᄌᄀᅄ | 기선기계법 H조그애 | 공사계약금액×국토부장관이 고시한 | | |
| 보증금액 | 건설기계별 보증금액 | 업종별 건설기계투입비율 | | |
| 보증서 형태 | 건설기계별로 개별보증서 발급 | 공사현장별로 하나의 보증서 | | |
| ロスコフレ | 건설기계 대여일부터 | 공사 계약일로부터 ~ 준공일까지 | | |
| 보증기간 | 계약 이행일까지 보증 | | | |
| 보증수수료 | 건별 보증금액 × 보증수수료율(%) | 현장별 보증금액 × 보증수수료율(%) × | | |
| <u> </u> | 선물 모증급적 스 모증구구표활(20) | 보증기간(일자)/365일 | | |
| | | 당초 보장된 보증금액에서 실제 투입량에 따라 | | |
| 보증 수수료 | _ | 정산제도 도입 | | |
| 사후 정산 | | 계획보다 투입량이 적을 경우 보증금액 반환 | | |
| | | 계획보다 투입량이 많을 경우 보증금액 추가 | | |
| | | ○ 전자계약 시스템 개발 | | |
| 실제 건설기계 | | ○ 투입된 건설기계 일한내역 확인을 위한 | | |
| 르세 건글기계 투입 확인방안 | _ | GPS 설치 | | |
| 구남 국 년 6년 | | ○ 시행규칙 개정(현장별 보증금액 및 통보 | | |
| | | 사항 추가 등) | | |

자료: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제365회 국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붙임5

Ⅲ 건설기계 대여대금지급보증 실태

1. 건설기계 대여현황

1.1. 건설업 공사기간 및 공사금액별 현황

- □ 건설업 공사기간 및 공사금액별 현황과 구성비는 〈표Ⅲ-1~4〉와 같음
 - 2016년 기준 종합건설업의 공사기간별 공사건 수는 3~6개월 미만이 16,829건으로 전체의 24%를 차지하고 있으며, 공사금액별 공사건 수는 4,000만원 미만이 12,632 건으로 전체의 18%를 차지하고 있음
 - 2016년 기준 전문건설업의 공사기간별 공사건 수는 1~3개월 미만이 260,335건으로 전체의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공사금액별 공사건 수는 1,000만원 미만이 262,872건으로 전체의 40%를 차지하고 있음

〈표 Ⅲ-1〉종합건설업 공사기간별 현황

| 7 8 | 건수 | | 공사금액 | |
|----------------|--------|------|------------|------|
| 구 분 | 건수(건) | 비율 | 공사금액(10억원) | 비율 |
| 1개월 미만 | 6,731 | 10% | 588.9 | 0% |
| 1~2개월 미만 | 9,041 | 13% | 852.9 | 1% |
| 2~3개월 미만 | 6,482 | 9% | 1,459.1 | 1% |
| 3~6개월 미만 | 16,829 | 24% | 10,620.6 | 7% |
| 6~9개월 미만 | 11,854 | 17% | 14,186.6 | 9% |
| 9~12개월 미만 | 7,506 | 11% | 18,303.7 | 11% |
| 12~15개월 미만 | 4,318 | 6% | 13,025.7 | 8% |
| 15~18개월 미만 | 2,033 | 3% | 8,383.1 | 5% |
| 18~21개월 미만 | 1,411 | 2% | 8,502.3 | 5% |
| 21~24개월 미만 | 818 | 1% | 8,371.4 | 5% |
| 24개월 이상 | 2,336 | 3% | 77,720.7 | 48% |
| 합 계 | 69,359 | 100% | 162,015.5 | 100% |

자료: 국가통계포털 종합건설업 계약실적(2016년) 데이터 가공

〈표 Ⅲ-2〉종합건설업 공사금액별 현황

| 7 8 | 건 | 수 | 공사 | 금액 |
|------------------|--------|------|------------|------|
| 구 분 | 건수(건) | 비율 | 공사금액(10억원) | 비율 |
| 4,000만원 미만 | 12,632 | 18% | 205.2 | 0% |
| 4,000~5,000만원 미만 | 1,628 | 2% | 72.4 | 0% |
| 5,000만원~1억원 미만 | 6,498 | 9% | 477.3 | 0% |
| 1억~2억원 미만 | 8,169 | 12% | 1,183.7 | 1% |
| 2억~5억원 미만 | 12,446 | 18% | 4,092.9 | 3% |
| 5억~10억원 미만 | 10,209 | 15% | 7,342.1 | 5% |
| 10억~30억원 미만 | 10,618 | 15% | 18,120.8 | 11% |
| 30억~50억원 미만 | 2,778 | 4% | 10,715.9 | 7% |
| 50억~100억원 미만 | 2,168 | 3% | 15,095.2 | 9% |
| 100억~200억원 미만 | 974 | 1% | 13,587.8 | 8% |
| 200억~500억원 미만 | 672 | 1% | 20,670.4 | 13% |
| 500억~1,000억원 미만 | 316 | 0% | 22,293.6 | 14% |
| 1,000억원 이상 | 251 | 0% | 48,157.6 | 30% |
| 합계 | 69,359 | 100% | 162,015.5 | 100% |

자료: 국가통계포털 종합건설업 계약실적(2016년) 데이터 가공

〈표 Ⅲ-3〉 전문건설업 공사기간별 현황

| 7 8 | 건 | 수 | 공사금액 | | |
|------------|---------|------|------------|------|--|
| 구 분 | 건수(건) | 비율 | 공사금액(백만원) | 비율 | |
| 1개월 미만 | 253,075 | 39% | 3,831,512 | 4% | |
| 1~3개월 미만 | 260,335 | 40% | 11,704,835 | 13% | |
| 3~6개월 미만 | 59,670 | 9% | 10,763,322 | 12% | |
| 6~9개월 미만 | 25,800 | 4% | 10,206,936 | 11% | |
| 9~12개월 미만 | 17,544 | 3% | 10,574,327 | 12% | |
| 12~15개월 미만 | 18,477 | 3% | 10,012,061 | 11% | |
| 15개월 이상 | 21,222 | 3% | 34,467,230 | 38% | |
| 합 계 | 656,123 | 100% | 91,560,223 | 100% | |

자료: 국가통계포털 전문건설업 계약실적(2016년) 데이터 가공

〈표 Ⅲ-4〉 전문건설업 공사금액별 현황

| 7 H | 건수 | | | 공사금액 | | | |
|-------------------|---------|------|------|------------|------|------|--|
| 구 분 | 건수(건) | 비율 | 누적 | 공사금액(백만원) | 비율 | 누적 | |
| 1,000만원 미만 | 262,872 | 40% | 40% | 1,137,058 | 1% | 1% | |
| 1,000만~1,500만원 미만 | 62,664 | 10% | 50% | 773,777 | 1% | 2% | |
| 1,500만~2,000만원 미만 | 65,008 | 10% | 60% | 1,152,265 | 1% | 3% | |
| 2,000만~5,000만원 미만 | 102,106 | 16% | 75% | 3,256,616 | 4% | 7% | |
| 5,000만~1억원 미만 | 58,405 | 9% | 84% | 4,187,534 | 5% | 11% | |
| 1억~3억원 미만 | 56,848 | 9% | 93% | 9,860,048 | 11% | 22% | |
| 3억~5억원 미만 | 16,785 | 3% | 95% | 6,485,298 | 7% | 29% | |
| 5억~10억원 미만 | 15,167 | 2% | 98% | 10,621,809 | 12% | 41% | |
| 10억~15억원 미만 | 5,665 | 1% | 98% | 6,894,550 | 8% | 48% | |
| 15억~20억원 미만 | 3,017 | 0% | 99% | 5,199,290 | 6% | 54% | |
| 20억~30억원 미만 | 2,994 | 0% | 99% | 7,275,573 | 8% | 62% | |
| 30억~50억원 미만 | 2,246 | 0% | 100% | 8,590,649 | 9% | 71% | |
| 50억원 이상 | 2,346 | 0% | 100% | 26,125,757 | 29% | 100% | |
| 합계 | 656,123 | 100% | 100% | 91,560,223 | 100% | 100% | |

자료: 국가통계포털 전문건설업 계약실적(2016년) 데이터 가공

1.2. 건설기계 대여현황

- □ 건설기계의 대여기간별, 계약금액별 현황은 〈표Ⅲ-5~8〉과 같음
 - 대한건설기계협회의 최근 5년간 건설기계 대여 현황자료에 따르면, 1~3개월 미만이 73건으로 41%를 차지하고 있으며, 500만~1,000만원 미만이 74건으로 전체의 42%를 차지하고 있음
 - 전문건설공제조합의 건설기계 대여 현황자료에서는 1~3개월 미만이 67,251건으로 48%를 차지하고 있으며, 500만~1,000만원 미만이 40,284건으로 29%를 차지하고 있음
 - 두 기관의 데이터 모두 건설기계 대여기간 1~3개월 미만, 건설기계대여 계약금액 500만~1,000만원 미만의 구역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Ⅲ-5〉 건설기계 대여기간별 현황1

| 7 8 | 건 | 수 | 계약금액 | | |
|-----------|-------|------|-----------|------|--|
| 구 분 | 건수(건) | 비율 | 계약금액(백만원) | 비율 | |
| 1개월 미만 | 33 | 19% | 215 | 5% | |
| 1~3개월 미만 | 73 | 41% | 967 | 23% | |
| 3~6개월 미만 | 38 | 21% | 1,127 | 27% | |
| 6~9개월 미만 | 16 | 9% | 483 | 12% | |
| 9~12개월 미만 | 8 | 4% | 651 | 16% | |
| 12개월 이상 | 10 | 6% | 719 | 17% | |
| 총합계 | 178 | 100% | 4,161 | 100% | |

자료: 대한건설기계협회 데이터 가공(2013~2018년)

〈표 Ⅲ-6〉 건설기계 계약금액 현황1

| 구 분 | 건수 | | 계약금액 | 평균 계약금액 | |
|-------------------|-----|------|-----------|---------|-------|
| T 正 | 건수 | 비율 | 계약금액(백만원) | 비율 | (백만원) |
| 500만원 미만 | 19 | 11% | 46 | 1% | 2 |
| 500만~1,000만원 미만 | 74 | 42% | 582 | 14% | 7 |
| 1,000만~1,500만원 미만 | 19 | 11% | 226 | 5% | 11 |
| 1,500만~2,000만원 미만 | 14 | 8% | 229 | 5% | 16 |
| 2,000만~5,000만원 미만 | 35 | 20% | 1,049 | 25% | 29 |
| 5,000만~1억원 미만 | 11 | 6% | 578 | 14% | 52 |
| 1억원 이상 | 6 | 3% | 1,452 | 35% | 241 |
| 총합계 | 178 | 100% | 4,161 | 100% | 23 |

자료: 대한건설기계협회 데이터 가공(2013~2018년)

〈표 Ⅲ-7〉 건설기계 대여기간별 현황2

| 7 8 | 건 | 수 | 계약금액 | | |
|------------|---------|------|-----------|------|--|
| 구 분 | 건수(건) | 비율 | 계약금액(백만원) | 비율 | |
| 1개월 미만 | 37,217 | 27% | 231,436 | 10% | |
| 1~3개월 미만 | 67,251 | 48% | 832,082 | 35% | |
| 3~6개월 미만 | 21,952 | 16% | 574,582 | 24% | |
| 6~9개월 미만 | 7,147 | 5% | 285,700 | 12% | |
| 9~12개월 미만 | 3,313 | 2% | 184,098 | 8% | |
| 12~15개월 미만 | 1,729 | 1% | 130,257 | 5% | |
| 15개월 이상 | 1,774 | 1% | 158,989 | 7% | |
| 총합계 | 140,383 | 100% | 2,397,145 | 100% | |

자료: 전문건설공제조합 자료 재구성(2005~2018년)

〈표 Ⅲ-8〉 건설기계 계약금액 현황2

| 7 8 | 건 | 수 수 | 계약금액 | 평균 계약금액 | |
|-------------------|---------|--------|-----------|---------|-------|
| 구 분 | 건수 | 비율 | 계약금액(백만원) | 비율 | (백만원) |
| 500만원 미만 | 36,559 | 26% | 110,083 | 5% | 3 |
| 500만~1,000만원 미만 | 40,284 | 29% | 301,304 | 13% | 7 |
| 1,000만~1,500만원 미만 | 18,715 | 13% | 225,378 | 9% | 12 |
| 1,500만~2,000만원 미만 | 13,632 | 10% | 236,137 | 10% | 17 |
| 2,000만~5,000만원 미만 | 22,809 | 16% | 694,850 | 29% | 30 |
| 5,000만~1억원 미만 | 6,119 | 4% | 418,213 | 17% | 68 |
| 1억~3억원 미만 | 2,057 | 1% | 310,934 | 13% | 151 |
| 1억~5억원 미만 | 148 | 0% | 56,166 | 2% | 379 |
| 1억~10억원 미만 | 54 | 0% | 34,975 | 1% | 648 |
| 1억~15억원 미만 | 3 | 0% | 3,585 | 0% | 1,195 |
| 15억원 이상 | 3 | 0% | 5,519 | 0% | 1,840 |
| 총합계 | 140,383 | 100% | 2,397,145 | 100% | 17 |

자료: 전문건설공제조합 자료 재구성(2005~2018년)

2.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현황

2.1.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현황

□ 건설기계별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현황을 살펴보면 기계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남. 굴삭기, 덤프트럭이 전체 건설기계의 75%를 차지하고 있어 일부 건설기 계에 편중되어 있음

〈표 Ⅲ-9〉 건설기계별 보증현황

| 구분 | 건 | 수 | 보증금액 | | |
|--------|--------|-----|-----------|-----|--|
| T正 | 건수(건) | 비율 | 보증금액(백만원) | 비율 | |
| 골재살포기 | 5 | 0% | 113 | 0% | |
| 기압축기 | 422 | 0% | 5,146 | 0% | |
| 굴삭기 | 72,355 | 52% | 1,127,532 | 47% | |
| 기중기 | 5,388 | 4% | 137,052 | 6% | |
| 노면파쇄기 | 1,392 | 1% | 17,590 | 1% | |
| 덤프트럭 | 32,693 | 23% | 467,191 | 19% | |
| 도로보수트럭 | 11 | 0% | 157 | 0% | |

| 78 | 건 | 수 | 보증금액 | | |
|------------|---------|------|-----------|------|--|
| 구분 | 건수(건) | 비율 | 보증금액(백만원) | 비율 | |
| 로더 | 2,890 | 2% | 67,028 | 3% | |
| 롤러 | 5,753 | 4% | 50,891 | 2% | |
| 모터그레이더 | 820 | 1% | 12,942 | 1% | |
| 불도저 | 3,228 | 2% | 51,044 | 2% | |
| 쇄석기 | 28 | 0% | 799 | 0% | |
| 스크레이퍼 | 7 | 0% | 520 | 0% | |
| 아스팔트살포기 | 54 | 0% | 258 | 0% | |
| 아스팔트피니셔 | 2,727 | 2% | 20,690 | 1% | |
| 준설선 | 20 | 0% | 10,125 | 0% | |
| 지게차 | 1,314 | 1% | 18,642 | 1% | |
| 천공기 | 2,947 | 2% | 130,472 | 5% | |
| 콘크리트믹서트럭 | 1,655 | 1% | 33,766 | 1% | |
| 콘크리트믹서트레일러 | 10 | 0% | 361 | 0% | |
| 콘크리트뱃칭플랜트 | 151 | 0% | 4,802 | 0% | |
| 콘크리트살포기 | 28 | 0% | 1,158 | 0% | |
| 콘크리트펌프 | 4,311 | 3% | 150,489 | 6% | |
| 콘크리트피니셔 | 119 | 0% | 3,825 | 0% | |
| 타워크레인 | 188 | 0% | 11,377 | 0% | |
| 터널용고소작업차 | 849 | 1% | 20,970 | 1% | |
| 트럭지게차 | 35 | 0% | 705 | 0% | |
| 특수건설기계 | 219 | 0% | 3,236 | 0% | |
| 하타및항발기 | 764 | 1% | 48,265 | 2% | |
| 총합계 | 140,383 | 100% | 2,397,145 | 100% | |

자료: 전문건설공제조합 재구성(2005~2018년)

□ 업종별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현황 역시 업종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남. 토 공사업종과 철근콘크리트공사업종이 전체공사업종의 68%를 차지하고 있어 기계별 보증현황과 동일하게 편중되어 있음

〈표 Ⅲ-10〉 업종별 보증현황

| 74 | 건 | 수 | 보증금액 | | |
|-------------|---------|------|-----------|------|--|
| 구분 | 건수(건) | 비율 | 보증금액(백만원) | 비율 | |
| | 743 | 1% | 3,478 | 1% | |
|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종 | 569 | 0% | 8,339 | 0% | |
| 도장공사업종 | 66 | 0% | 746 | 0% | |
| 보링공사업종 | 1,679 | 1% | 46,682 | 2% | |
| 비계공사업종 | 3,649 | 3% | 77,918 | 3% | |
| 삭도공사업종 | 4 | 0% | 138 | 0% | |
| 상하수도업종 | 13,418 | 10% | 188,893 | 8% | |
| 석공공사업종 | 2,843 | 2% | 20,785 | 1% | |
| 설비공사업종 | 113 | 0% | 3,271 | 0% | |
| 수중공사업종 | 1,115 | 1% | 50,715 | 2% | |
| 습식방수공사업종 | 198 | 0% | 1,417 | 0% | |
| 승강기공사업종 | 18 | 0% | 116 | 0% | |
| 시설물공사업종 | 1,272 | 1% | 14,679 | 1% | |
| 실내공사업종 | 59 | 0% | 918 | 0% | |
| 조경시설물공사업종 | 1,960 | 1% | 32,404 | 1% | |
| 조경식재공사업종 | 3,127 | 2% | 42,316 | 2% | |
| 종합공사업종 | 2,896 | 2% | 35,637 | 1% | |
| 준설공사업종 | 116 | 0% | 9,285 | 0% | |
| 지붕판금공사업종 | 212 | 0% | 5,557 | 0% | |
| 철강재공사업종 | 232 | 0% | 3,150 | 0% | |
| 철도공사업종 | 233 | 0% | 6,300 | 0% | |
| 철콘공사업종 | 17,807 | 13% | 304,764 | 13% | |
| 토공사업종 | 77,556 | 55% | 1,423,887 | 59% | |
| 포장공사업종 | 10,219 | 7% | 90,668 | 4% | |
| 기타 | 279 | 0% | 5,081 | 0% | |
| 총합계 | 140,383 | 100% | 2,397,145 | 100% | |

자료: 전문건설공제조합 자료 재구성(2005~2018년)

2.2. 전문건설업체의 지급보증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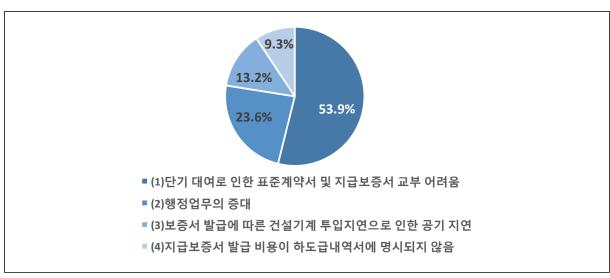
- □ 설문조사 내용과 업체별 면담을 통한 전문건설업체의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실태를 파악하여 기존 보증제도의 개선 방향을 점검하고자 함
- □ 전문건설업체는 건설기계 대여기간이 짧고, 대여 건수가 많아 건설기계를 대여할 때 마다 건설기계 지급보증서 발급해야 하며, 공사당 지급보증 건수가 증가함에 따른 보증업무 증가로 지급보증을 기피하거나 제대로 이뤄지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

- □ 게다가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비용이 하도급내역서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전문건설업체가 비용 부담을 떠안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 전문건설업체는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을 제 대로 발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표 Ⅲ-11〉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이 활성화 되지 않은 이유

(단위: 업체수, %)

| 구 분 | 업체수 | ≃ (%) |
|-------------------------------------|-----|--------------|
| (1) 단기 대여로 인한 표준계약서 및 지급보증서 교부 어려움 | 388 | 53.9% |
| (2) 행정업무의 증대 | 170 | 23.6% |
| (3) 보증서 발급에 따른 건설기계 투입지연으로 인한 공기 지연 | 95 | 13.2% |
| (4) 지급보증서 발급 비용이 하도급내역서에 명시되지 않음 | 67 | 9.3% |
| 합 계 | 720 | 100.0% |



출처: 전문건설업실태조사 분석보고서(2017)

□ 이와 동일한 맥락으로 전문건설업체의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지 않는 이유로 번거롭다는 의견이 47.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관련 제도에 대한 무지(27.6%), 지급보증에 소요되는 비용문제(21.8%) 순이었음

〈표 Ⅲ-12〉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하지 않는 이유

(단위: 업체수, %)

| 구 분 | 업체수 | ÷ (%) |
|---------------|-----|--------|
| (1) 번거로움 | 113 | 47.3% |
| (2) 제도를 잘 몰라서 | 66 | 27.6% |
| (3) 비용 부담 | 52 | 21.8% |
| (4) 기타 | 8 | 3.3% |
| 합 계 | 239 | 100.0% |



출처: 전문건설업실태조사 분석보고서(2017)

- □ 전문건설업체는 근본적으로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취약한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어 동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 6개의 전문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면담조사를 실시한 결과, 건설기계지급보증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음
 - 건설기계 투입비중 및 계약형식이 업종별·기계별로 매우 상이하며, 공사일정 및 기계장비 단가의 변동이 많아 이에 따른 보증 관련 행정업무가 과도한 실정임
 - 현장별 보증을 도입할 경우 건설기계 대여대금 200만 원 이하를 포함한 일괄적인 보증이 성립되므로 보증서의 누락 없이 공정한 관리가 가능하고, 발급이 간편하며 이에 따른 행정업무의 감소가 예상됨. 그러나 현장별 보증에서 보증수수료를 사후 정산할 경우 정산업무에 대한 행정업무가 가중되는 격으로 행정업무 간소화라 볼 수 없음
 - 현장별 보증을 도입할 경우 대규모 공사 시 보증을 위한 개설구좌 확보와 보증한도 를 늘려야 하는 금전적 부담이 가중될 수 있음
 - 현행 계약서상 보증수수료 정산 시 미사용 잔액은 환수5)되나, 초과 사용분은 지급받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보증수수료 확보를 위해 고시문에 명시된 '보증수수료 초과 지출 분은 원도급내역서의 보증수수료 범위 내에서 추가 지급할 수 있다6)'는 내용을 포함하는 시행령 개정이 필요함

⁵⁾ 건산법 시행령 제64조의3제3항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의 명시

⁶⁾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363호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 국토교통부고시 개정령안(2016.06.22.)

3.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체납현황

- □ 대한건설기계협회에서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지급보증이 제도 적으로 의무화된 2013년 6월 이후에도 건설기계대여대금 체납은 여전했으며 2014년 이후 대여대금 체납 건수가 오히려 증가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에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음
 -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체납건수는 2012년 289건에 비해 2013년의 188건으로 감소하였으나 2014년 285건, 2015년 469건, 2016년 415건, 2017년 551건으로 계속적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어 지급보증제도 시행 전후 아무런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지 않음

〈표 Ⅲ-13〉 연도별 건설기계대여대금 체납현황

(단위: 년, 건)

| 구 분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
| 체납신고건 | 55 | 527 | 364 | 289 | 188 | 285 | 469 | 415 | 551 |

□ 임대료 체납현황을 금액기준으로 살펴보면, 지급보증대상인 대여금액 2백만 원 이하인 구간을 제외한 2백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비교적 적은 금액 구간에 체납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남

〈표 Ⅲ-14〉 금액구간별 임대료 체납 현황

(단위: 천원, %)

| 구 분 | | 2백만원 이하 | 2백만원 초과 5백만원 이하 | 5백만원 초과 1천만원 이하 | 1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 | 2억원 초과 | 합 계 | |
|-----|----|-------------------|--------------------------|--------------------------|--------------------------|-------------------------|------------------------|-----------|-----------|------------|
| | 현황 | 건수(건) | 309 | 267 | 275 | 492 | 57 | 29 | 6 | 1,435 |
| 3 | 23 | 체 불금 액 | 312,681 | 935,742 | 2,018,887 | 10,880,158 | 3,852,367 | 4,134,999 | 2,719,943 | 24,854,778 |
| 년 | 비율 | 건수(%) | 21.5 | 18.6 | 19.2 | 34.3 | 4.0 | 2.0 | 0.4 | 100.0 |
| 누 | 미프 | 금액(%) | 1.3 | 3.8 | 8.1 | 43.8 | 15.5 | 16.6 | 10.9 | 100.0 |
| 적 | 누적 | 건(%) | 21.5 | 40.1 | 59.3 | 93.6 | 97.6 | 99.6 | 100.0 | _ |
| | 비율 | 금액(%) | 1.3 | 5.1 | 13.2 | 57.0 | 72.5 | 89.1 | 100.0 | _ |

자료: 대한건설기계협회 데이터 가공(2015~2017년)

□ 기간별 임대료 체납현황의 경우, 대여기간이 짧을수록 체납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 되었음

〈표 Ⅲ-15〉건설기계 대여기간별 체납현황

(단위: 건, %)

| 구 분 | 해당 건수(건) | 해당비율(%) |
|--------------------|----------|---------|
| 1주일 미만 | 136 | 24.7 |
| - 1주일 이상~1개월 미만 | 107 | 19.5 |
| 1개월 이상~2개월 미만 | 103 | 18.7 |
| 2개월 이상~3개월 미만 | 71 | 12.9 |
| 3개월 이상~4개월 미만 | 51 | 9.3 |
| 4개월 이상~5개월 미만 | 29 | 5.3 |
| 5개월 이상~6개월 미만 | 15 | 2.7 |
| 6개월 이상~12개월 미만 | 32 | 5.8 |
| 12개월 이상 | 6 | 1.1 |
| 총합계 | 550 | 100.0 |

자료: 대한건설기계협회 데이터 가공(2017년)-체납현황 분석

- □ 이와 같이 전문건설업체가 건설기계대여계약 체결 시 보증가입이 의무화되어 있긴 하나, 현장에서는 단기임대 등을 이유로 구두계약을 체결하여 보증서 발급을 회피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전문건설업체의 보증가입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 나고 있음
- □ 조사결과 건설기계 대여기간이 7일미만인 경우가 24.7%임. 또한 정부자료에 의하면 전문건설업체의 건설기계대여대금 보증가입률을 10%내외로 추산하고 있음

Ⅳ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 개선방안

1.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쟁점사항

- □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의 당초 취지는 건설도급단계 중 가장 낮은 단계인 건설 기계 장비 대여업자의 대여금 지급을 확실히 보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 □ 현장별 보증의 도입은 건설기계대여업 종사자 보호라는 업체의 보증사고 방지 측면과 보증 간소화로 인한 행정수요 절감을 통해 전문건설업체의 관련인력을 고려한 현장관리 측면을 모두 고려해야할 것임
- □ 기존의 개별보증에서 현장별 보증으로 전환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 활성화를 통해 장비임대업체의 체불 방지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어야 할 것임

2. 현장별 보증과 개별 보증의 합리적 적용 범위 제안

-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68조의3 ①항에서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건설기계 대여계약 체결 건별로 보증서를 발급하여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교부할 수 있도록 함
- □ 정부는 기존의 개별보증의 효과적인 적용을 위해 현장별 보증을 제안하였으며, 이 에 본 연구에서 현장별 보증의 적용범위를 두 가지로 제안하였음. 현장별 보증범 위는 공사금액과 공사기간을 구분하여 정하였음
- □ 현장별 보증범위의 1안의 경우는 공사금액 5천만원 이상과 공사기간 1년 이상, 2 안의 경우 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과 공사기간 3개월 이상인 경우 현장별 보증을 제안하였음

〈표 Ⅳ-1〉 현장별 보증범위

| 구 분 | 공사금액 | 공사기간 | 비고 |
|------|----------|--------|---------|
| 대안 1 | 5천만 원 이상 | 1년 이상 | 보증사고 분석 |
| 대안 2 | 2천만 원 이상 | 3개월 이상 | 보증건수 분석 |

□ 현장별 보증은 기존의 건설기계 당 지급보증의 개념이 아닌 현장 단위의 보증이므로 현장의 특성을 반영하여 보증범위를 제안하였음. 따라서 현행 건설기계 개별 보증 시 고려되었던 건설기계대여건수는 현장별 보증범위의 기준에 포함하지 않았음

2.1. 현장별 보증범위 대안 1

- □ 건설기계대여금의 효과적인 체납 방지를 위해 현장별 보증범위를 공사금액 5천만 원 이상, 공사기간 1년 이상의 공사로 한정하여 현장별 보증범위를 설정하였음
- □ 보증범위 산정을 위해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제공한 건설기계대여대금 관련 보증 자료 중 보증사고 실태를 파악하였음. 보증사고 실태를 통해 건설기계대여대금지 급 보증사고가 발생한 공사금액, 보증건수, 보증사고 건수, 공사기간 등의 범위를 분석하였음
- □ 보증사고 자료 중 공사금액에 따라 보증건수와 보증사고 건수를 파악하여 보증건 수 대비 보증사고 건수를 살펴보았음. 보증사고 건수는 공사금액 5천만 원 이상부 터 발생하고 있으며, 그 이하의 범위에서는 발생하고 있지 않음
- □ 공사금액 범위가 10억원 이상일 경우, 보증사고 건수가 가장 높은 비율이며 공사금 액이 클수록 보증사고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앞서 건설기계대여 대금 체납이 대여금액 적고 대여기간이 짧은 것과는 반대의 양상을 나타내고 있음

〈표 IV-2〉 공사금액별 보증건수 및 보증사고건수

(단위: 건, %)

| 공사금액 | 보증건수 | 구성비(%) | 보증사고건수 | 구성비(%) |
|-----------------------|---------|--------|--------|--------|
| 1,000만원 미만 | 1,686 | 1.2% | _ | 0.0% |
| 1,000만원 이상~5,000만원 미만 | 13,899 | 9.9% | _ | 0.0% |
| 5,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 | 7,760 | 5.5% | 19 | 1.9% |
| 1억원 이상~10억원 미만 | 23,541 | 16.8% | 61 | 6.0% |
| 10억원 이상 | 93,497 | 66.6% | 942 | 92.2% |
| 총합계 | 140,383 | 100.0% | 1,022 | 100.0% |

□ 공사금액별 보증건수 및 보증금액 비율의 경우 5천만원 이상 해당 보증건수 비율은 88.9%이며 해당 보증금액 비율은 거의 100%를 차지하고 있음. 보증사고의 경우 공사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의 공사의 98.8%가 해당하고 있으며 5천만 원 이상의 경우 88.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표 Ⅳ-3〉 공사금액별 보증건수 및 보증금액(해당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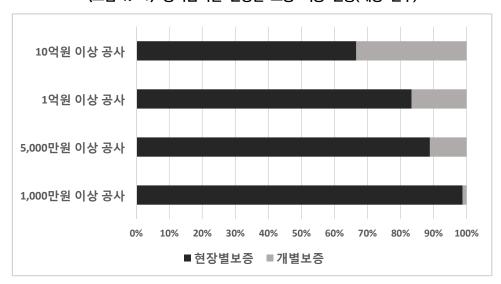
| 공사금액 | 보증건수 | -(건, %) | 보증금액(백민 | <u> </u> 만원, %) |
|-----------------------|---------|---------|---------------|-----------------|
| 1,000만원 미만 | 1,686 | 1.2% | 12,943 | 0.0% |
| 1,000만원 이상~5,000만원 미만 | 13,899 | 9.9% | 346,021 | 0.0% |
| 5,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 | 7,760 | 5.5% | 571,335 | 0.0% |
| 1억원 이상~10억원 미만 | 23,541 | 16.8% | 10,073,055 | 0.7% |
| 10억원 이상 | 93,497 | 66.6% | 1,373,318,054 | 99.2% |
| 총합계 | 140,383 | 100.0% | 1,384,321,408 | 100.0% |

〈표 Ⅳ-4〉 공사금액별 건수 및 금액 비율(해당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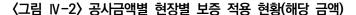
| 현장별 공사금액 구분 | 해당 건수 비율 | 해당 금액 비율 |
|---------------|----------|----------|
| 1,000만원 이상 공사 | 98.8% | 100.0% |
| 5,000만원 이상 공사 | 88.9% | 100.0% |
| 1억원 이상 공사 | 83.4% | 99.9% |
| 10억원 이상 공사 | 66.6% | 99.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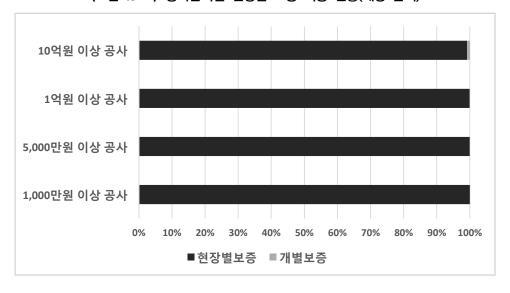
□ 공사건수별 현장별 보증과 개별 보증의 적용범위를 도식으로 표현하면 전체 공사 중 현장별 보증범위와 개별 보증범위의 구성비율의 파악이 가능함. 또한 공사금액 별 현장별 보증과 개별 보증의 분포양상의 경우 금액 구분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 이러한 결과는 전문건설업체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을 한 경우에 한한 것으로 건설기계대여금 체납과는 달리 전문건설업체가 공사금액 이 일정부분 이상일 경우에 한해 보증서를 발급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을 것임
 - 공사금액별 전문건설업 현황을 보면 천만원 미만의 전문건설공사 건수가 전체 40%, 공사금액 5천만원 미만 공사 건수는 전체 75%를 차지하고 있어 대다수의 전문건설 공사 규모가 영세한 실정임. 공사금액 분포상 공사금액 5천만원 미만 공사는 공사금 액비율상 7%에 그치고 있음



〈그림 Ⅳ-1〉 공시금액별 현장별 보증 적용 현황(해당 건수)





- □ 공사기간에 따른 보증사고 현황을 살펴봤을 때, 공사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의 구간에서 평균 보증건수가 6건이며, 보증사고 건수는 전체 27.3%(279건)을 차지하고 있어 6개월 이상 1년 미만 공사의 9.6%(98건)보다 보증사고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 □ 그러나 10년 이상 공사의 경우 평균 보증 건수가 16건으로 5년 이상 10년 미만 공사의 평균 보증건수 36건 보다 오히려 감소하였음. 이러한 수치는 계속공사의 경우 아직 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개별 보증 건수가 모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표 Ⅳ-5〉 공사기간별 보증건수 및 보증사고건수

| 공사기간 | 보증건수(건, %) | | 평균 보증건수 | 보증사고건 | 보증사고/ 보증건수 | |
|------------|------------|--------|------------|-------|---------------|------|
| 1개월 미만 | 4,699 | 3.3% | 1 | 1 | 0.1% | 0.0% |
| 1개월~3개월 미만 | 16,465 | 11.7% | 1 | 17 | 1.7% | 0.1% |
| 3개월~6개월 미만 | 11,501 | 8.2% | 2 | 49 | 4.8% | 0.4% |
| 6개월~1년 미만 | 17,948 | 12.8% | 3 | 98 | 9.6% | 0.5% |
| 1년~2년 미만 | 24,610 | 17.5% | 6 | 279 | 27.3% | 1.1% |
| 2년~3년 미만 | 27,927 | 19.9% | 12 | 334 | 32.7% | 1.2% |
| 3년~4년 미만 | 20,384 | 14.5% | 25 | 179 | 17.5% | 0.9% |
| 4년~5년 미만 | 8,247 | 5.9% | 26 | 28 | 2.7% | 0.3% |
| 5년~10년 미만 | 8,463 | 6.0% | 36 | 37 | 3.6% | 0.4% |
| 10년 이상 | 139 | 0.1% | 16 | - | 0.0% | 0.0% |
| 총합계 | 140,383 | 100.0% | 4 | 1,022 | 100.0% | 0.7% |

□ 공사기간 구분에 따른 보증건수 및 보증금액을 분석한 결과, 공사기간 1년 이상 2 년 미만의 구간에서 보증건수 증가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보증금액의 경우 2년 이상 3년 미만의 공사구간에서 가장 높은 상승폭을 나타내고 있음

| 〈표 IV-6〉 | 공사기간별 | 보증건수 | 및 | 보증금액 |
|----------|-------|------|---|------|
|----------|-------|------|---|------|

| 공사기간 | 보증건수 | -(건, %) | 보증금액(백만 | 원, %) |
|------------|---------|---------|---------------|--------|
| 1개월 미만 | 4,699 | 3.3% | 214,365 | 0.0% |
| 1개월~3개월 미만 | 16,465 | 11.7% | 1,829,048 | 0.1% |
| 3개월~6개월 미만 | 11,501 | 8.2% | 5,706,925 | 0.4% |
| 6개월~1년 미만 | 17,948 | 12.8% | 32,892,777 | 2.4% |
| 1년~2년 미만 | 24,610 | 17.5% | 119,195,110 | 8.6% |
| 2년~3년 미만 | 27,927 | 19.9% | 319,492,434 | 23.1% |
| 3년~4년 미만 | 20,384 | 14.5% | 414,351,996 | 29.9% |
| 4년~5년 미만 | 8,247 | 5.9% | 206,079,504 | 14.9% |
| 5년~10년 미만 | 8,463 | 6.0% | 279,560,344 | 20.2% |
| 10년 이상 | 139 | 0.1% | 4,998,905 | 0.4% |
| 총합계 | 140,383 | 100.0% | 1,384,321,408 | 10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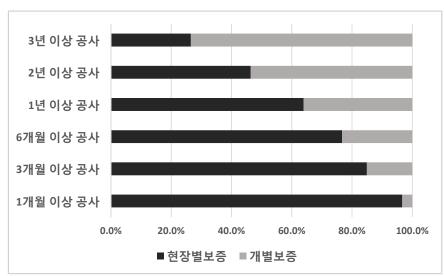
- □ 앞서 살펴본 것처럼 공사기간 1년 이상부터 보증건수 증가폭이 높은 것을 감안하여 현장별 보증범위 설정을 위해 공사기간에 따른 해당 보증건수 및 보증금액 비율을 분석한 결과, 현장별 보증범위 구간을 공사기간 1년 이상으로 하였음
 - 현장별 보증범위를 공사기간 1년 이상으로 할 경우, 전체 보증공사 중 해당 보증건 수 비율은 56.9%, 해당 보증금액 비율은 97.1%가 포함될 것으로 파악됨
 - 단, 여기서 언급한 공사범위는 전체 전문건설공사의 범위가 아닌 보증대상인 전문건설공사로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을 발급 받았던 공사를 대상으로 한 것임
- □ 공사기간 구분에 따라 현장별 보증범위 적용 현황을 각각 살펴보면, 공사기간 3개월 이상인 경우 해당 보증건수 비율은 전체공사의 84.9%, 보증금액의 경우 전체공사의 99.9%를 차지하고 있음

〈표 Ⅳ-7〉 공사기간별 현장별 보증범위 적용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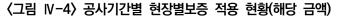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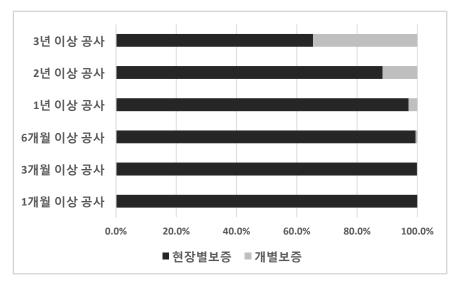
| 현장별 보증 공사기간 구분 | 해당 건수 비율 | 해당 금액 비율 |
|----------------|----------|----------|
| 1개월 이상 공사 | 96.7% | 100.0% |
| 3개월 이상 공사 | 84.9% | 99.9% |
| 6개월 이상 공사 | 76.7% | 99.4% |
| 1년 이상 공사 | 63.9% | 97.1% |
| 2년 이상 공사 | 46.4% | 88.5% |
| 3년 이상 공사 | 26.5% | 65.4% |

□ 〈그림 IV-3〉과 〈그림 IV-4〉는 공사기간별 현장별 범위를 나타낸 것임



〈그림 Ⅳ-3〉 공사기간별 현장별보증 적용 현황(해당 건수)





- □ 분석결과, 현장별 보증기준은 공사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공사기간 1년 이상의 공사에 적용하도록 함
- □ 현장별 보증은 현장단위의 개념으로 공사현장의 규모에 따른 보증기준을 정하는 것이 적정할 것이며, 현장별 보증단위의 기준의 변경이 쉽지 않은 이점이 있음. 따라서 현장별 보증범위는 공사계약금액과 공사기간을 기준으로 적용범위를 설정하였음

□ 제안한 공사범위에서 현장별 보증을 시행하여 기존 개별보증관련 행정 처리의 불 편함을 해소할 수 있고, 관련 보증제도의 효과적인 시행이 가능할 것임

2.2. 현장별 보증범위 대안 2

| 대안 | 2의 | 경우 | 공사금액 | 2천만 | 원 | 이상, | 공사기간 | 3개월 | 이상의 | 공사에 | 한해 | 현 |
|----|----|-----|-------|-----|---|-----|------|-----|-----|-----|----|---|
| 장별 | 보증 | ·범위 | 를 제안함 | | | | | | | | | |

- □ 현장별 보증범위 대안1의 경우,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한 업체로 그 대상을 한정하여 보증사고 및 보증금액을 분석하여 현장별 보증범위를 정하였음. 그러나 건설기계 보증가입률이 저조한 것을 감안하면 전체 전문건설업체의 특성을 반영하기에는 다소 무리일 수 있음
- □ 따라서 전체 전문건설업체의 특성 및 여건을 반영할 수 있도록 보증건수가 아닌 건설기계 대여건수를 기준으로 현장별 보증범위인 대안 2를 제안하였음. 즉, 건설 기계 대여건수 1건일 경우의 공사기간 및 공사금액을 분석하여 보증범위를 설정하 였음
- □ 이에 따라 현장별 보증과 구분할 수 있는 개별보증의 범위를 제시하고자 함
 - 한 공사현장에서 1건의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단기공사의 경우 포괄적 개념을 적용한 현장별 보증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1건의 공사의 경우 개별보증을 적용하도록 함
 - 따라서 개별보증 건수가 1건인 공사를 분석하여 공사기간 및 공사금액을 살펴본 결과, 〈표 IV-8〉과 같이 1건의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공사 중 1~3개월 미만이 9,765건 (45%)로 가장 많았음

〈표 Ⅳ-8〉 건설기계 대여건수별 공사기간 현황

(건)

| 기간 대여건수 | 1개월 미만 | 1~3개월 미만 | 3~6개월 미만 | 6~9개월 미만 | 9~12개월 미만 | 12~15개 월 미만 | 15개월 이상 | 총합계 |
|------------|-----------|-------------|-------------|-------------|--------------|----------------|------------|--------|
| 1 | 3,500 | 9,765 | 3,933 | 1,541 | 1,115 | 573 | 1,427 | 21,854 |
| 2 | 273 | 1,417 | 1,271 | 713 | 492 | 303 | 1,043 | 5,512 |
| 3 | 75 | 486 | 499 | 334 | 306 | 207 | 667 | 2,574 |
| 4 | 38 | 205 | 238 | 198 | 189 | 129 | 488 | 1,485 |
| 5 | 22 | 141 | 134 | 99 | 110 | 89 | 387 | 982 |
| 6 | 16 | 57 | 74 | 70 | 78 | 60 | 305 | 660 |
| 7 | 5 | 21 | 45 | 58 | 45 | 54 | 202 | 430 |
| 8 | 1 | 11 | 17 | 36 | 41 | 36 | 156 | 298 |
| 9 | | 3 | 17 | 29 | 36 | 28 | 142 | 255 |
| 10 | 1 | 7 | 13 | 25 | 34 | 16 | 148 | 244 |
| | | | | | | | | |
| 합계 | 3,932 | 12,128 | 6,284 | 3,207 | 2,578 | 1,629 | 6,454 | 36,212 |

자료: 전문건설공제조합 자료 재구성(2005~2018년)

- 개별보증을 할 수밖에 없는 1건의 건설기계 대여가 45%를 차지하고 있는 1~3개월 미만의 공사를 개별보증의 기준으로 삼고, 동 기간 대에서 가장 높은 비율의 공사금 액 대를 〈표 Ⅳ-9〉과 같이 살펴보면 1,500만~2,000만원 미만의 공사로 나타남 (2,151건(18%))

〈표 Ⅳ-9〉 건설공사금액별 공사기간 현황

(건)

| 공사기간 공사금액 | 1개월 미만 | 1~3개월 미만 | 3~6개월 미만 | 6~9개월 미만 | 9~12개월 미만 | 12~15개월 미만 | 15개월 이상 | 총합계 |
|-------------------|-----------|-------------|-------------|-------------|--------------|---------------|------------|--------|
| 1,000만원 미만 | 665 | 862 | 49 | 6 | | 3 | 1 | 1,586 |
| 1,000만~1,500만원 미만 | 738 | 1,389 | 129 | 8 | 1 | 6 | 3 | 2,274 |
| 1,500만~2,000만원 미만 | 1,299 | 2,151 | 246 | 19 | 5 | 10 | 6 | 3,736 |
| 2,000만~3,000만원 미만 | 521 | 1,571 | 358 | 59 | 18 | 6 | 6 | 2,539 |
| 3,000만~4,000만원 미만 | 208 | 1,132 | 344 | 57 | 24 | 5 | 3 | 1,773 |
| 4,000만~5,000만원 미만 | 127 | 934 | 340 | 71 | 34 | 6 | 6 | 1,518 |
| 5,000만~6,000만원미만 | 80 | 715 | 331 | 67 | 23 | 11 | 10 | 1,237 |
| 6,000만~1억원 미만 | 166 | 1,731 | 1,297 | 397 | 229 | 76 | 32 | 3,928 |
| 1억~3억원 미만 | 97 | 1,263 | 1,895 | 826 | 494 | 172 | 243 | 4,990 |
| 3억~5억원 미만 | 9 | 203 | 565 | 460 | 328 | 147 | 318 | 2,030 |
| 5억~10억원 미만 | 12 | 121 | 399 | 535 | 536 | 285 | 725 | 2,613 |
| 15억원 미만 | 2 | 29 | 148 | 249 | 256 | 223 | 663 | 1,570 |
| 20억원 미만 | 4 | 8 | 74 | 142 | 198 | 140 | 540 | 1,106 |
| 30억원 미만 | 2 | 11 | 50 | 127 | 208 | 200 | 770 | 1,368 |
| 50억원 미만 | | 5 | 40 | 113 | 122 | 184 | 945 | 1,409 |
| 100억원 미만 | 1 | 1 | 17 | 49 | 67 | 116 | 897 | 1,148 |
| 200억원 미만 | | 1 | 2 | 19 | 31 | 34 | 759 | 846 |
| 500억원 미만 | 1 | 1 | | 3 | 4 | 5 | 487 | 501 |
| 500억원 이상 | | | | | | | 40 | 40 |
| 총합계 | 3,932 | 12,128 | 6,284 | 3,207 | 2,578 | 1,629 | 6,454 | 36,212 |

자료: 전문건설공제조합 자료 재구성(2005~2018년)

- □ 〈표 IV-8,9〉에 따라 건설기계대여기간 3개월 미만, 공사금액 2,000만원 미만의 공사를 〈표 IV-10〉과 같이 적용해보면 개별보증의 범위는 전체건수 대비 6%(8,352건), 전체금액 대비 0%(100,270백만 원)로 나타남
- □ 이를 전문건설업 계약실적에 대입하여 전문건설공사의 개별보증 범위를 예상해보 면〈표 IV-11〉와 같음
 - 도출한 개별보증 범위인 3개월 미만, 2,000만원 미만을 차지하는 공사건수의 비율은 56%(366,060건)이며, 공사금액의 비율은 3%(2,809,408백만 원)임
- □ 따라서 공사기간과 공사금액별로 개별보증 범위를 분석한 결과 현장별 보증범위는 공사기간 3개월 이상, 공사금액 2,000만 원 이상의 공사로 설정하였음

〈표 Ⅳ-10〉 전문건설업 공사기간별 공사규모

(건, 백만원)

| | 1개월 | 미만 | 1~3개 | 월 미만 | 3~6개월 | 월 미만 | 6~9개 | 월 미만 | 9~12개 | 월 미만 | 12~15가 | 월 미만 | 15개월 | 이상 | 합 | 계 |
|-------------------|-------------------|--------------------|-------------------|--------------------|-------|------|------|------|-------|------|--------|------|------|-----|----------------|----------------------|
|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 1,000만원 미만 | 1% (713) | 0% (4,994) | 1% (1,063) | 0% (6,676)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1% | 0% |
| 1,000만~1,500만원 미만 | 1% (792) | 0% (9,312) | 1% (1,680) | 0% (17,511)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2% | 0% |
| 1,500만~2,000만원 미만 | 1% (1,436) | 0% (23,280) | 2% (2,668) | 0% (38,494)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3% | 0% |
| 2,000만~3,000만원 미만 | 0% | 0% | 2%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3% | 0% |
| 3,000만~4,000만원 미만 | 0% | 0% | 1%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2% | 0% |
| 4,000만~5,000만원 미만 | 0% | 0% | 1%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2% | 0% |
| 5,000만~6,000만원 미만 | 0% | 0% | 1%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1% | 0% |
| 6,000만~1억원 미만 | 0% | 0% | 2% | 0% | 2% | 0% | 1% | 0% | 1% | 0% | 0% | 0% | 0% | 0% | 5% | 1% |
| 1억~3억원 미만 | 0% | 0% | 1% | 0% | 3% | 1% | 2% | 0% | 1% | 0% | 1% | 0% | 1% | 0% | 9% | 2% |
| 3억~5억원 미만 | 0% | 0% | 0% | 0% | 1% | 0% | 1% | 0% | 1% | 0% | 1% | 0% | 2% | 0% | 5% | 1% |
| 5억~10억원 미만 | 0% | 0% | 0% | 0% | 1% | 1% | 1% | 1% | 1% | 1% | 1% | 0% | 5% | 1% | 9% | 3% |
| 10억~15억원 미만 | 0% | 0% | 0% | 0% | 0% | 0% | 0% | 1% | 1% | 1% | 1% | 1% | 5% | 2% | 6% | 4% |
| 15억~20억원 미만 | 0% | 0% | 0% | 0% | 0% | 0% | 0% | 0% | 0% | 1% | 0% | 0% | 5% | 2% | 6% | 4% |
| 20억~30억원 미만 | 0% | 0% | 0% | 0% | 0% | 0% | 0% | 1% | 0% | 1% | 1% | 1% | 6% | 3% | 8% | 6% |
| 30억~50억원 미만 | 0% | 0% | 0% | 0% | 0% | 0% | 0% | 1% | 0% | 1% | 1% | 1% | 8% | 7% | 10% | 10% |
| 50억~100억원 미만 | 0% | 0% | 0% | 0% | 0% | 0% | 0% | 1% | 0% | 1% | 0% | 1% | 9% | 12% | 10% | 15% |
| 100억~200억원 미만 | 0% | 0% | 0% | 0% | 0% | 0% | 0% | 0% | 0% | 1% | 0% | 1% | 9% | 20% | 9% | 22% |
| 200억~500억원 미만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8% | 27% | 8% | 28% |
| 500억원 이상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1% | 4% | 1% | 4% |
| 합계 | 3% | 0% | 12% | 2% | 8% | 3% | 6% | 5% | 6% | 6% | 5% | 6% | 59% | 78% | 100% (140,383) | 100% (54,366,407) |

자료: 전문건설공제조합 자료 재구성(2005~2018년)

〈표 IV-11〉 전문건설업 공사기간별 공사규모

(건,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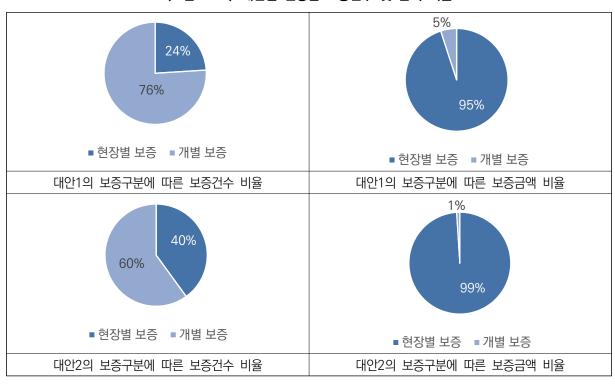
| | 1개월 미만 | | 1~3개닭 | 월 미만 | 3~6개 | 월 미만 | 6~9개월 미만 9~12개 | | 월 미만 | 12~15가 | 월 미만 | 15개월 | 실 이상 | 합계 | | |
|-------------------|----------------------|---------------------|---------------------|---------------------|------|------|----------------|-----|------|--------|------|------|------|-----|-------------------|----------------------|
|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 1,000만원 미만 | 25% (165,808) | 1% (618,287) | 13% (85,295) | 1% (458,953) | 1% | 0% | 0% | 0% | 0% | 0% | 0% | 0% | 0% | 0% | 40% | 1% |
| 1,000만~1,500만원 미만 | 4% (23,855) | 0% (292,830) | 5% (32,897) | 0% (407,396)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10% | 1% |
| 1,500만~2,000만원 미만 | 3% (21,490) | 0% (379,641) | 6% (36,715) | 1% (652,301) | 1% | 0% | 0% | 0% | 0% | 0% | 0% | 0% | 0% | 0% | 10% | 1% |
| 2,000만~5,000만원 미만 | 4% | 1% | 8% | 2% | 2% | 0% | 1% | 0% | 0% | 0% | 0% | 0% | 0% | 0% | 16% | 4% |
| 5,000만~1억원 미만 | 1% | 1% | 4% | 2% | 2% | 1% | 1% | 0% | 0% | 0% | 0% | 0% | 0% | 0% | 9% | 5% |
| 1억~3억원 미만 | 1% | 1% | 3% | 4% | 2% | 3% | 1% | 1% | 1% | 1% | 0% | 1% | 1% | 1% | 9% | 11% |
| 3억~5억원 미만 | 0% | 0% | 0% | 1% | 1% | 2% | 0% | 1% | 0% | 1% | 0% | 1% | 0% | 1% | 3% | 7% |
| 5억~10억원 미만 | 0% | 0% | 0% | 1% | 0% | 2% | 0% | 2% | 0% | 2% | 0% | 1% | 1% | 3% | 2% | 12% |
| 10억~15억원 미만 | 0% | 0% | 0% | 0% | 0% | 1% | 0% | 1% | 0% | 1% | 0% | 1% | 0% | 2% | 1% | 8% |
| 15억~20억원 미만 | 0% | 0% | 0% | 0% | 0% | 1% | 0% | 1% | 0% | 1% | 0% | 1% | 0% | 2% | 0% | 6% |
| 20억~30억원 미만 | 0% | 0% | 0% | 0% | 0% | 1% | 0% | 1% | 0% | 1% | 0% | 1% | 0% | 4% | 0% | 8% |
| 30억~50억원 미만 | 0% | 0% | 0% | 0% | 0% | 1% | 0% | 1% | 0% | 1% | 0% | 1% | 0% | 5% | 0% | 9% |
| 50억원 이상 | 0% | 0% | 0% | 0% | 0% | 1% | 0% | 2% | 0% | 2% | 0% | 4% | 0% | 20% | 0% | 29% |
| 합계 | 39% | 4% | 40% | 13% | 9% | 12% | 4% | 11% | 3% | 12% | 3% | 11% | 3% | 38% | 100% (656,123) | 100% (91,560,223) |

자료: 국가통계포털 전문건설업 계약실적(2016년) 데이터 가공

2.3. 대안별 전문건설업체의 현장별 보증 규모

- □ 대안 1은 공사금액 5천만원 이상, 공사기간 1년 이상의 경우 현장별 보증을 제안 함. 단, 제안한 범위일지라도 보증건수가 1건일 경우는 개별보증을 함
- □ 대안 1에 의한 현장별 보증규모는 전체 전문건설공사의 해당건수의 경우 24%, 해당금액의 경우 95%를 차지함
- □ 대안 2는 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 공사기간 3개월 이상의 경우 현장별 보증을 제안함. 단, 제안한 범위일지라도 보증건수가 1건일 경우는 개별보증을 함
- □ 대안 2에 의한 현장별 보증규모는 전체 전문건설공사의 해당건수의 경우 40%, 해당금액의 경우 99%를 차지함
- □ 건설기계대여금액이 2백만 원 이하의 경우 지급보증이 제외되는 것을 감안할 때적지 않은 범위일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보증금액 비율의 경우 대안 2의 경우 전체 전문건설공사의 99%까지 현장별 보증범위에 포함됨





〈표 Ⅳ-12〉대안에 따른 현장별 보증규모

| 구 분 | 고나그애 | マルフフト | 전체 전문공사중 해당비율 | | | | |
|---------|---------------|-----------|---------------|----------|--|--|--|
| T 正 | 구 분 공사금액 공사기간 | 5시기간 - | 해당 건수(%) | 해당 금액(%) | | | |
| 대안 1 | 5천만 원 이상 | 1년 이상 | 24% | 95% | | | |
| 대안 2 | 2천만 원 이상 | 3개월 이상 | 40% | 99% | | | |

□ 본 연구에서 제안한 현장별 보증범위 대안 1과 대안 2를 전문건설업 공사기간 및 공사금액에 따라 범위를 구분하면 〈표 IV-13〉과 같이 표시할 수 있음. 음영으로 표시한 부분이 현장별 보증범위이며, 좀 더 짙은 음영부분은 대안 1에만 포함되는 현장별 보증범위임

〈표 Ⅳ-13〉 전문건설업 공사기간별 공사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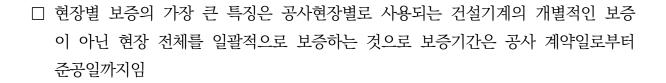
| | 1개월 미만 | | 1~3개 | 월 미만 | 3~6개 | 월 미만 | 6~9개1 | 월 미만 | 9~12개 | 월 미만 | 12~15가 | 월 미만 | 15개월 | 이상 | 합. | 합계 | |
|-------------------|--------|----|------|------|------|------|-------|------|-------|------|--------|------|------|--------|------|------|--|
|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
| 1,000만원 미만 | 25% | 1% | 13% | 1% | 1% | 0% | 0% | 0% | 0% | 0% | 0% | 0% | 0% | 0% | 40% | 1% | |
| 1,000만~1,500만원 미만 | 4% | 0% | 5%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10% | 1% | |
| 1,500만~2,000만원 미만 | 3% | 0% | 6% | 1% | 1% | 0% | 0% | 0% | 0% | 0% | 0% | 0% | 0% | 0% | 10% | 1% | |
| 2,000만~5,000만원 미만 | 4% | 1% | 8% | 2% | 2% | 0% | 1% | 0% | 0% | 0% | 0% | 0% | 0% | 0% | 16% | 4% | |
| 5,000만~1억원 미만 | 1% | 1% | 4% | 2% | 2% | 1% | 1% | 0% | 0% | 0% | 0% | 0% | 0% | 0% | 9% | 5% | |
| 1억~3억원 미만 | 1% | 1% | 3% | 4% | 2% | 3% | 1% | 1% | 1% | 1% | 0% | 1% | 1% | 1% | 9% | 11% | |
| 3억~5억원 미만 | 0% | 0% | 0% | 1% | 1% | 2% | 0% | 1% | 0% | 1% | 0% | 1% | 0% | 1% | 3% | 7% | |
| 5억~10억원 미만 | 0% | 0% | 0% | 1% | 0% | 2% | 0% | 2% | 0% | 2% | 0% | 1% | 1% | 3% | 2% | 12% | |
| 10억~15억원 미만 | 0% | 0% | 0% | 0% | 0% | 1% | 0% | 1% | 0% | 1% | 0% | 1% | 0% | 2% | 1% | 8% | |
| 15억~20억원 미만 | 0% | 0% | 0% | 0% | 0% | 1% | 0% | 1% | 0% | 1% | 0% | 1% | 0% | 2% | 0% | 6% | |
| 20억~30억원 미만 | 0% | 0% | 0% | 0% | 0% | 1% | 0% | 1% | 0% | 1% | 0% | 1% | 0% | 4% | 0% | 8% | |
| 30억~50억원 미만 | 0% | 0% | 0% | 0% | 0% | 1% | 0% | 1% | 0% | 1% | 0% | 1% | 0% | 5% | 0% | 9% | |
| 50억원 이상 | 0% | 0% | 0% | 0% | 0% | 1% | 0% | 2% | 0% | 2% | 0% | 4% | 0% | 20% | 0% | 29% | |
| 합계 | 39% | 4% | 40% | 13% | 9% | 12% | 4% | 11% | 3% | 12% | 3% | 11% | 3% | 38% | 100% | 100% | |

자료: 국가통계포털 전문건설업 계약실적(2016년) 데이터 가공

3. 보증 수수료 확보방안 필요

- □ 현장별 보증범위 및 그 이외의 구간의 대여금 체납 및 보증사고 방지를 위해 업체의 독려 및 하도급내역서에 보증 수수료를 확실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 도급계약의 특성상 하도급업체는 원도급업체의 공사내역에 반영되지 못한 간접비용 즉, 공기연장 등 추가간접비가 확실히 답보되지 않는다면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의 활성화는 요원할 것으로 판단됨
- □ 현장별 보증 도입으로 인한 업체의 보증수수료 부담이 증가되는 것에 따라 관련보 증기관의 수수료 요율의 적정한 책정으로 업체의 부담이 최소화되어야 할 것임

V 결론 및 향후과제



- □ 당초 보장된 보증금액에서 실제 투입량에 따라 정산제도를 도입하여 계획보다 투입량이 적을 경우 보증금액 반환 혹은 계획보다 투입량이 많을 경우 보증금액을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중에 있음. 실제 현장에 건설기계투입을 확인하기 위해 전자계약 시스템, GPS 설치 등도 검토하고 있음
- □ 전문건설공사의 기간이 주로 1년을 넘지 않은 것을 고려할 때, 건설 현장당 건설 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건수가 많게는 평균 18건이며, 최대보증건수로는 공사기간 6년 동안 806건의 지급보증이 이뤄지고 있음
- □ 더욱이 건설기계 투입비중 및 계약형식이 업종별·기계별로 매우 상이하며, 공사일정 및 기계장비 단가의 변동이 많아 이에 따른 보증 관련 행정업무가 과도한 상황임
- □ 기존의 개별 보증방식으로 인한 전문건설업체의 행정처리 부담이 적지 않은 것을 고려할 때 이번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의 현장별 도입으로 관련업체의 부담을 줄여 당초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 본 연구에서 제안한 개별보증 및 현장별 보증의 범위를 바탕으로 건설기계대여대 금 지급보증의 보다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여 기계보증의 체납 및 보증사고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임
- □ 그러나 현장별 보증을 도입할 경우 향후 현행 개별보증에 비해 높아질 수수료를 반영할 수 있는 방안과 현장별 보증에서 보증수수료를 사후 정산할 경우 정산업무 에 대한 행정업무가 가중되는 격으로 행정업무 간소화의 당초 취지와 부합하지 않 는 점 등 여건 조성 등의 후속조치가 보완되어야 할 것임

- □ 전문건설업은 업종별 공사별 내용 및 규모상 편차가 크며, 건설기계대여 종류 및 대여기간도 매우 다양함. 따라서 현장별 보증범위를 일정한 기준에 맞춰 한정하는 것에 대해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정부는 현장별 보증 도입후 국토부장관이 고시한 업종별 건설기계투입비율을 고려하여 보증금액을 산정하여 업종별 특성 반영이 가능할 것임
 - 또한 보증금액 산정시 업종별 특성뿐 아니라 기계경비별 보증금액 반영도 추후 고려 해야 할 것임

- 이보라, 연구위원(bora@ricon.re.kr)
- 김정주, 연구원(naomi0821@ricon.re.kr)

참 고 문 헌

- 1.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제365회 국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 2. 대한전문건설협회(2017),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분석보고서

일괄보증제 도입 등 보증제도 개선방안

2018년 10월인쇄2018년 10월발행

발행인 서명교

발 행 처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15, 13층(신대방동, 전문건설회관)

TEL (02)3284-2600

FAX (02)3284-2620

홈페이지 www.ricon.re.kr

등 록 2007년 4월 26일(제319-2007-17호)

ISBN 979-11-5953-051-7

인 쇄 처 경성문화사(02-786-2999)